

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 인근 상권회복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
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'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'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7일

(재)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

나.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 (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)

다. 지원대상 : 2026.1.1.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(2025.7.1. 이전 개업)이며,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 상권(23개 행정동*)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* 소상공인

* 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
* 23개 행정동 : 별첨2 참조

* 제외업종(별첨1) 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, 약국 등

라. 지원내용 : 2026.1.1.이후 신규채용 근로자(광주거주, 19세 이상 64세 이하)의 인건비 월 50만원, 최대 3개월 지원(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)

※ 19세 이상(2007.1.1.이전출생) ~ 64세 이하(1962.1.1.이후출생) 연령 기준일 : 2026.1.1.

마. 수행기관: (재)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
2 지원내용

가. 지원기간 : 2026. 2. ~ 12. (지원기간 내 최대 3개월)

나. 지원사항

- 인건비 지원 :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, 최대 3개월 지원

- 지원 인원 : 1개 업체당 2명 이내

※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

다. 지원조건

(1) 2026. 1. 1.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

(2) 근로시간 :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

(3)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,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

※ 사업주 임금체불,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, 최저임금 미만 지급, 4대 사회보험 미가입, 4대 사회보험료 체납,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

※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

※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7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판단

라. 참고사항

-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(고용보험 가입인원 수)를 통해 확인 (2026.1.1.~신청일)

-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

-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)

<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*주된 업종 판단기준 >

·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(표준재무제표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)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

3 신청자격

| 구분 | 신청자격 |
|-----------|---|
| 소상공인(사업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*5인 미만(제조, 건설, 운수, 광업 10인 미만)이면서, 사업장이 <u>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(23개동)에 소재한 소상공인</u> *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(2026.1.1.~ 신청일) - 2026. 1. 1.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(2025.7.1. 이전 개업) - 지원제외업종(별첨1) : 유흥업, 사행성·퇴폐 업종 및 약국 등 |
| 근로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(주민등록등본 상) - 19세 이상 ~ 64세 이하 미취업자 (2007.1.1. 이전 출생 ~ 1962.1.1. 이후 출생) ※ 연령기준일 : 2026.1.1. |

< 근로자 지원제의 대상자 >

-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
- ②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,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
-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4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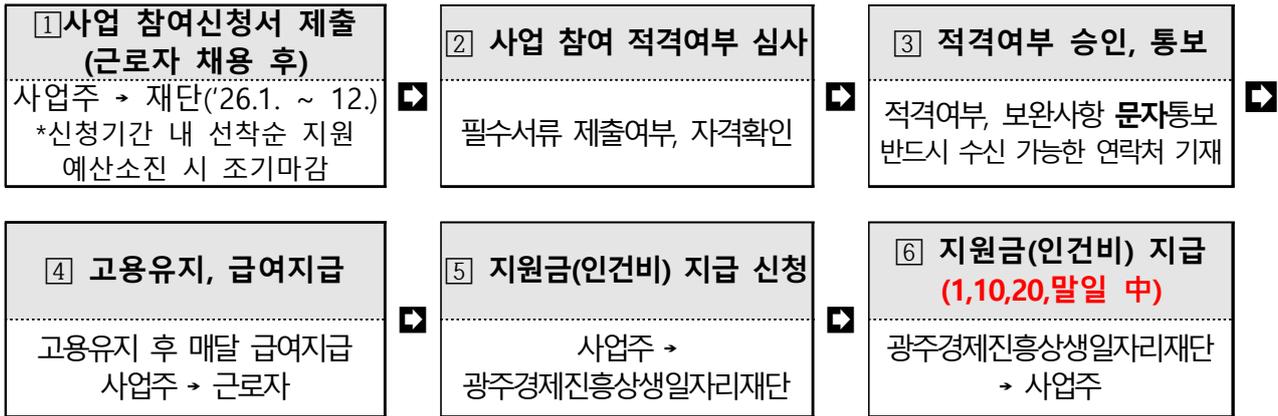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2026. 1. 5. ~ 예산 소진 시까지
 - * 신청기간 내 **선착순 지원**이며, **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**
- 신청방법
 -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gbizinfo.or.kr)
 - (소상공인지원 - [1차]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/ [2차] 인건비 지급신청)
 - *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, 보완 후 재접수 요함
(30일 이내로 미접수시 자동 취소될 수 있음)
- 제출서류

| 구분 | 신청주기 | 제출서류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규채용 지원신청 | 최초 1회 | 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(행정정보공동이용, 체크리스트포함)[서식1] ② 근로계약서 사본 [서식2] *기존에 계약한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단, 채용조건, 근로시간, 주휴수당 포함한 실급여 등이 나와있어야함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서식3] ④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발급본)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신청월 발급본) * ①~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| |
| | |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②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(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) |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별도제출 |
| 인건비 지급신청 | 계속고용 1개월 후 | ① 급여대장,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(1~3개월분) ②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월 발급본) ③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(신청월 발급본) ④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* ①~④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| |

-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: **문자 안내**

*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하며, 반드시 적격 여부 통보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

○ 지원절차



5 유의사항

- 사업주가 2026. 1. 1. ~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(구조조정 등)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
 - 단, 개인사정으로 인한 **자진퇴사**는 가능,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(근로복지공단 발급)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 확인
 - 사업주가 2026. 1. 1.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
 -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(1개월 이상)을 경과하여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, 검토 후 기업에 일괄지급
 -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(**현금 지급 불인정**)
 - 월 단위 또는 3개월 일괄 신청 가능
 -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3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퇴사 한 경우 퇴사일 (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)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
 - 단,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
 -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 불가
 -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
- (예시) '26.5.10자 채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('26.6.9 이후)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가능
-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, 잔여 지원기간 2개월은 소멸
 -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, 기존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 여부 재승인 받아야함.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

- 신규 채용 대상 근로자를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 변경 불가
 -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
- 지도감독
 - 재단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
- 환수
 - 오지급·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
 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
- 기타
 - 신청서 작성 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 기준 부적합 시,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 -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
 -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**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**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

6 문의처

- (재)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: 062)960-2633, 2636

광주광역시와 (재)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 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 또한 지원기업에서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. (☎ 062-613-3722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(뒷면)

본인(신청인 및 채용근로자 각각)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구비서류(사업자등록증명, 4대보험 완납증명서, 채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※ 채용근로자

| 성명 |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여부 (주민등록표 등초본) | 주민등록번호 | 서명 또는 인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동의 / 미동의 | - | |
| | 동의 / 미동의 | - | |

첨부

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부정수급방지 체크리스트

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~ 64세 이하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 19세이상(2007.1.1.이전출생) ~ 64세이하(1962.1.1.이후출생) 미취업자 ※ 연령 기준일 : 2026.1.1.

위 지원 사업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드리며,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란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.

(1개 문항이라도 “아니요”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 불가)

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 요건 | 예 | 아니요 |
|---|---|-----|
| 1.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. | | |
| 2.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. | | |
| 3. 신규 채용자로 국가 다른 사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. | | |
| 4.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| | |
| 5.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닙니다. *별첨1 참고 | | |
| 6. 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주(사업장)가 아닙니다. | | |
| 7. 2026년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습니다.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요건 | | |
| 1.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. | | |
| 2.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 | | |
| 3. 중앙정부,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아닙니다. | | |
| 4.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가 아닙니다. | | |

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됨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(사업주) :

(서명 또는 인)

(재)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

표준근로계약서

_____ (이하 "채용기업"이라 함)과(와) _____ (이하 "근로자"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_____년__월__일부터 _____년__월__일까지

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"근로개시일"만 기재

2. 근무장소 :

3. 업무의 내용 :

4. 근로시간 : _____시__분부터 _____시__분까지 (휴게시간 : _____시__분 ~ _____시__분)

5. 근무일 : 월 화 수 목 금 토 일 (주 _____일)

6. 임금

- 월급(기본급) : _____ 원(주휴수당, 4대보험 포함)

7. 연차유급휴가

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
8. 사회보험 적용여부

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

9. 기타
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

2026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_____
연락처 : _____
대표자 : _____ (서명)

(근로자) 연락처 : _____
성명 : _____ (서명)

서식3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①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| | |
|---------|---|
| 수집·이용목적 | ①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|
| |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(만족도 조사) |
| 수집·이용항목 |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, 업종,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 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전자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 거래액, 일반연구인력개발비,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신용카드 결제금액,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, 품목 번호, 총 신고가격, 목적지, 신고일 |
| |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(전화번호, 이메일 등) |
| 수집·이용기관 | · 중소벤처기업부 |
| 수집·이용기간 | ·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|

② 기업(신용)정보의 파기

| | |
|-----------|--|
| 파기대상 정보 | ·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·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, 이메일 등 |
| 파기절차 및 방법 | ·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,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·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|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※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- ※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 기업명 ○○○
 대표자 ○○○ (인)

별첨1

지원제외 업종

*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등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)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------|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중개업 |
| 46209 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 중 | 약국, 한약국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|
| 52991 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|
| 56211 | 일반유희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희주점업 |
| 5821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2 |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|

| 표준산업분류 | 업 종 |
|----------|---|
| 76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31 | 수의업 |
| 73904 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| 흥신소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42 | 카지노운영업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|

별첨2
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 행정동

| 구 분 | 계 | 1단계 구간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23 | 23개 행정동 |
| 동 구 | 7 | 동명동, 계림1동, 계림2동, 산수1동, 지산1동, 서남동, 학동 |
| 서 구 | 6 | 유덕동, 치평동, 상무2동, 금호1동, 금호2동, 풍암동 |
| 남 구 | 6 | 양림동, 방림1동, 봉선1동, 백운2동, 주월1동, 주월2동 |
| 북 구 | 4 | 중흥1동, 중흥동, 우산동, 풍향동 |